

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단2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모두 ‘피고 B’, ‘피고 C’로만 칭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거래의 경위

(1) 피고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D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의 부탁으로 공사자금을 융통해 주곤 하였다.

(2) 한편,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은 원고 명의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D과 친하게 지내 왔는데, 2017.경 D에게 양산 F 소재 빌라 건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D(채무자)은 2017. 11. 2. 법무법인 G에서 피고 B(채권자)에게 ‘채권자는 2017. 11. 2.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7. 11. 19., 이자 및 지연이자율 연 25%의 각 조건으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1, 2017년 증제61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E과 원고는 위 공증 당시 D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 B은 2018. 5. 25.까지 D에게 합계 3,350만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합의서의 작성

(1) 피고 B은 그 후 D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8. 6. 5. 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H)를 신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2. 19. 피고 B과 ‘① 쌍방은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39,116,000원(원금 3,000만원, 이자 600만원, 경매비용 2,916,000원, 경매취하 및 출장비 등 20만원)으로 확정한다. ② 피고 B은 위 합의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경매사건을 2018. 12. 20. 취하한다. ③ 위와 같이 합의금이 변제된 후, 당사자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갑3,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7. 피고 B(신용불량자였다)이 지정하는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본안전 판단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쌍방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금 변제 후, 당사자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의 경매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간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본안 판단

피고 C는 신용불량자인 피고 B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 중 피고 B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선 정 자 명 단

- 1. B
- 2. C
- 끝.

